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 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김진원 선임	연락처	02-3145-7429		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업무용 단말기로 인터넷망에 위치한 VDI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VDI관리서버가 사용자 인증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의 망연계솔루션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용시스템(Microsoft Active Directory)과 통신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* 위반인지 여부						
	* 제15조(해킹 등 방지대책)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·운용하여야 한다. 3.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(무선통신망 포함)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 금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
판단이유		부통신망과 연기의 조치를 하여야	결된 내부 약 야 하고(전자금	업무용시스 융감독규정	·템을 외부통신망과 제15조 제1항 제3호),		
	통신망과의 분리· 하지 않으므로(비 ○ 인터넷망에 위치한	조치의견서 170	060),		망분리 취지에 부합		
	방식의 망연계솔	루션을 이용하 ⁶ 신하는 것은 전	여 내부 업무	무용시스틱	기가 가장인 스트디장 템(Microsoft Active 조제1항제3호 위반		

- ***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